거창군 조례제정·개폐청구 주민수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2007~ 13

제출연월일	2007. 6. 15.
제 출 자	거 창 군 수

1. 제정이유

「지방자치법 및 시행령」개정으로 조례의 제정이나 개폐를 청구할 수 있는 연서 주민수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연서 주민수를 법률이 규정한 범위 내에서 최소화하여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권을 최대한 보장하고, 군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목적을 규정함(안 제1조)

나. 조례의 제정 및 개폐에 필요한 연서 주민수를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50분의 1이상으로 함(안 제2조)

3.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지방자치법」제15조제1항
「지방자치법시행령」제10조의2

나. 예산조치 : 필요없음

다. 그 밖에

(1) 신·구조문대비표 : 해당없음

(2) 입법예고 (2007. 4. 24 ~ 5. 15) 결과 : 의견 없음

거창군조례 제　　호

거창군 조례제정·개폐청구 주민수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례의 제정이나 개폐 청구에 필요한 연서 대상 주민수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연서대상 주민총수) 조례의 제정이나 개폐에 필요한 연서 대상 주민수는 19세이상 주민총수의 50분의 1이상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거창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07 ~ 14

제출연월일	2007. 6. 15.
제 출 자	거 창 군 수

1. 개정이유

2005. 7. 27.「주차장법 시행령」제6조제1항의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거창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제14조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상위 법령에 맞게 개정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제처의 “법령입안 심사기준” 개정에 따른 법령제명 띄어쓰기와 법령명칭에 “「 」”를 하고, 법령용어를 알기 쉬운 우리말로 순화함 (제명, 안 제1조, 제3조제2항, 제5조제1항, 제7조제1항, 제9조제1항 및 제2항, 제9조제1항제1호, 제15조제1항제3호 및 제4호, 제16조제2항, 부칙 제3항 및 제4항, 제2항)

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변경(안 별표2) : 붙임 『별표2』 참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주차장법 시행령」제6조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다. 그 밖에

(1)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2)입법예고(2007. 4. 11 ~ 4. 30)결과 : 의견 없음

거창군조례 제　　호

거창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거창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를 “거창군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주차장법”, “주차장법 시행령”, “주차장법 시행규칙”을 각각 “「주차장법」”, “「주차장법 시행령」”, “「주차장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제5조제1항 및 제9조제1항제1호 중 “도로교통법”을 “「도로교통법」”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도시계획법”을 “「도시계획법」”으로 한다.

제9조제1항 및 제2항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제15조제1항제3호 중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을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로 하고, 제4호 중 “한국은행법”을 “「한국은행법」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단,”을 “다만,”으로 한다.

부칙(1992.2.13 조례 제1259호) 제3항 및 (1998.2.11 조례 제1467호) 중 “건축법”을 “「건축법」”으로 하고, (1992.2.13 조례 제1259호) 제4항 중 “거창군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거창군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거창군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거창군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주차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과 주차장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규정에서 지방자치 단체의 조례한다)의 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주차장법」----------「주차장법 시행령」----------「주차장법 시행규칙」----------.
제3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①(생 략) ②도로교통법 제2조 제16호의 규정에 의한 긴급 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 ③ (생 략)	제3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①(현행과 같음) ②「도로교통법」제2조제 16호의 규정에 의한 긴급 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 ③ (현행과 같음)
제5조(공영주차장의 표시) ①주차장의 표시는 도로교통법 제3조 및 동법시행규칙에 의한 교통안전 표시를 준용하되,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는 다음 각호의 내용을 기재하여 이용자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그 규격은 별지1호서식에 의한다. ②~③(생 략)	제5조(공영주차장의 표시) ①----------「도로교통법」----------. ②~③(현행과 같음)
제7조(주차장의 설치 등) ①도시계획결정을 받아 설치하여야 할 주차장은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결정후 실시계획 인가 또는 사업시행허가를 받아 설치하여야 한다. ②(생 략)	제7조(주차장의 설치 등) ①---------「도시계획법」----------. ②(현행과 같음)

신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요금의 감면) ①노상 및 직영 노외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1. 도로교통법 제2조 제16호의 규정에 의한 긴급자동차 2.~4. (생 략) ②노상 및 직영 노외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중 다음 각 호의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1에서 정한 주차요금의 2분의 1을 감경한다. 1.~3. (생 략)	제9조(요금의 감면) ① ----------각 호의 어느 하나----------. 1. 「도로교통법」 ---------- 2.~4. (현행과 같음) ② ----------각 호의 어느 하나 ----------. 1.~3. (현행과 같음)
제15조(부설주차장의 인근설치) ①(생 략) 1.~2. (생략) 3. 토지가액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 관한법률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의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평가업자가 6월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 4. 건축비는 당해 공영노외주차장이 건설에 소요된 건축비(설계비와 감리비를 포함한다)로 하되, 한국은행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은행이 조사.발표하는 생산자 물가지수로 보정하여 산정한다. ②(생 략)	제15조(부설주차장의 인근설치) ①(현행과 같음) 1.~2. (현행과 같음) 3.----------「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 관한법률」 ---------- 4.----------「한국은행법」----------. ②(현행과 같음)
제16조(주차장 설치비용 납부자의 주차장 무상사용) ①(생 략) ②영 제10조 제1항 규정에 의한 주차장 무상 사용기간은 납부된 주차장 설치 비용을 공영주차장 요금 별표1에 의거 주차요금 징수기준에 의한 징수요금으로 나누어 산정한다. 단, 주차요금 징수기준은 월 정기 주차권 요금(주, 야간)으로 한다.	제16조(주차장 설치비용 납부자의 주차장 무상사용) ①(현행과 같음) ②----------다만, ----------

신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부칙(1992.2.13 조례 제1259호) ①~②(생 략)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건축법 기타 다른법에 의거 허가, 심의, 승인을 받았거나 종전의 규정에 의거 허가, 심의, 승인받은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고 설계변경 등이 있을시는 변경되는 부분에 한하여 이 조례를 적용한다. ④(다른 조례 개정) 거창군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1992.2.13 조례 제1259호) ①~② (현행과 같음) ③(경과조치)----------「건축법」----------. ④(다른 조례 개정) 「거창군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부칙(1998.2.11 조례 제1467호) ①(생 략)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건축법 기타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등을 받았거나, 신청한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1992.2.11 조례 제1467호) ①(현행과 같음) ②(경과조치)----------「건축법」----------.

[별표 2] 거창군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

시 설 물		설 치 기 준	
현 행	개 정	현 행	개 정
1. 위락시설	1. 현행과 같음	○시설면적 80㎡당 1대	○현행과 같음
2.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을 제외한다), 판매 및 영업시설, 의료시설(정신병원·요양소 및 격리병원을 제외한다), 운동시설(골프장·골프연습장 및 옥외수영장을 제외한다), 업무시설, 공공용시설중 방송국	2.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을 제외한다), 판매 및 영업시설, 의료시설(정신병원·요양소 및 격리병원을 제외한다), 운동시설(골프장·골프연습장 및 옥외수영장을 제외한다), 업무시설(외국공관 및 오피스텔을 제외한다), 공공용시설 중 방송국	○주거 및 상업지역 : 시설면적 120㎡당 1대 ○기타지역 : 시설면적 150㎡당 1대	○현행과 같음
3. 제1종 근린생활시설(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3호 바목 및 사목을제외한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	3. 현행과 같음	○주거 및 상업지역 : 시설면적 150㎡당 1대 ○기타지역 : 시설면적 200㎡당 1대	○현행과 같음
4. 단독주택, 다세대 주택	4.단독주택(다가구주택을 제외한다)	○시설면적 130㎡초과 200㎡이하의 경우: 1대 ○시설면적 200㎡초과의 경우에는 1대에 200㎡를 초과하는 130㎡당 1대를 더한 대수(4가구 이상시 세대당 1대)	○시설면적 100㎡ 초과 130㎡ 이하 : 1대 ○시설면적 130㎡ 초과 : 1대에 130㎡를 초과하는 100㎡당 1대를 더한 대수 [1+{(시설면적-130㎡)/100㎡}]
5. 공동주택(다세대 주택·기숙사를 제외한다)	5. 다가구주택, 공동주택(기숙사를 제외한다),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시설면적 100㎡당 1대, 세대당 1대 중 많은 것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주차대수 ○이 경우 오피스텔의 전용면적은 공동주택의 전용면적 산정방법을 따른다. ○다만, 8가구 이상일 경우에는 가구당 1대로하되 산정된 주차대수와 비교하여 많은대수를 적용한다.
6. 골프장, 골프연습장, 옥외수영장, 관람장	6. 현행과 같음	○골프장의 경우에는 1홀당 10대 ○골프연습장의 경우에는 1타석당 1대 ○옥외수영장의 경우에는 정원 15인당 1대 ○관람장의 경우에는 정원 100인당 1대	○현행과 같음
7. 기타 건축물	7. 그 밖의 건출물	○시설면적 300㎡당 1대	○현행과 같음

<비고>

1. 시설물의 종류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건축법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에 의하되,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건축 또는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변전소·양수장·정수장·대피소·공중화장실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
   나. 종교시설중 수도원 ·수녀원·제실 및 사당
   다.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을 제외한다)
   라. 방송통신시설(방송국·전신전화국·통신용시설 및 촬영소에 한한다)중 송신·수신 및 중계시설
   마. 법 제2조제5호의2의 규정에 의한 주차전용건축물(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건축물에 한한다)에 주차장외의 용도로 설치하는 시설물(판매 및 영업시설 중 백화점·쇼핑센타·대형점과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영화관·전시장·예식장을 제외한다)
   바. 도시철도법에 의한 역사(이 영 제4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철도건설사업으로 건설되는 공공철도의 역사를 포함한다)

2. 시설물의 시설면적은 바닥면적의 합계를 말하되, 하나의 부지안에 2 이상의 시설물이 있는 경우에는 각 시설물의 시설면적을 합한 면적을 시설면적으로하며, 시설물 안의 주차를 위한 시설의 바닥면적은 당해 시설물의 시설면적에서 제외한다.

3. 시설물의 소유자는 부설주차장(당해 시설물의 부지에 설치하는 부설주차장을 제외한다)의 부지(지적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장지목에 한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이를 주차장전용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주차전용건축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소유권을 취득하여야 한다.

4. 용도가 다른 시설물이 복합된 시설물에 설치하여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용도가 다른 각 시설물별 설치기준에 의하여 산정(위 표 제5호의 시설물은 주차대수의 산정대상에서 제외하되, 비고 제8호 후단에서 정한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된 주차대수를 별도로 합산한다)한 소수점 이하 첫째자리까지의 주차대수를 합하여 산정한다. 다만,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을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의 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단독주택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의 면적에 대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단독주택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의 면적을 100제곱미터로 나눈 대수로 한다.

5. 시설물을 용도변경하거나 증축함에 따라 추가로 설치하여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용도변경하는 부분 또는 증축으로 인하여 면적이 증가하는 부분(이하 "증

축하는 부분"이라 한다)에 대하여만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다만, 위 표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을 증축하는 경우에는 증축 후 시설물의 전체면적에 대하여 위 표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에서 증축 전 시설물의 면적에 대하여 증축시점의 위 표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를 뺀 대수로 한다.

6. 설치기준(위 표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설치기준을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의하여 주차대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소수점 이하의 수(시설물을 증축하는 경우 먼저 증축하는 부분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수가 0.5 미만인 때에는 그 수와 나중에 증축하는 부분들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수를 합산한 수의 소수점 이하의 수. 이 경우 합산한 수가 0.5 미만인 때에는 0.5 이상이 될 때까지 합산하여야 한다)가 0.5 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1로 본다. 다만, 당해 시설물 전체에 대하여 산정된 총주차대수가 1대 미만인 경우에는 주차대수를 0으로 본다.

7. 용도변경되는 부분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가 1대 미만인 경우에는 주차대수를 0으로 본다. 다만, 용도변경되는 부분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의 합(2회 이상 나누어 용도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1대 이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지원등에관한특별법시행령이 적용되는 관광숙박시설에 관하여는 동시행령에 의한 기준을 적용하고,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중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이 적용되는 주택에 대하여는 동규정에 의한 기준을 적용한다.

9. 승용차와 승용차외의 자동차가 함께 사용하는 부설주차장의 경우에는 승용차외의 자동차의 주차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하며, 승용차외의 자동차가 더 많이 이용하는 부설주차장의 경우에는 그 이용빈도에 따라 승용차외의 자동차의 주차에 적합하도록 승용차외의 자동차가 이용할 주차장을 승용차용주차장과 구분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차대수의산정은 승용차를 기준으로 한다.

10.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물에는 부설주차장주차대수의 3퍼센트 이상을 장애인전용주차구획으로 구분·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가 10대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